

CEO Report

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(I)

: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

2012. 12

이기형 · 정인영

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.

CONTENTS

I. 서론	1
II. 보험상품 개발 및 수요 측면	3
1. 생명보험시장	3
2. 제3보험시장	4
3. 손해보험시장	8
III.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측면	11
1. 소유 및 지배구조	11
2. 보험모집채널	12
3. 인력운용	13
4. 경쟁정책	14
IV. 보험산업 감독정책 측면	15
1. 금융감독기구 재편	15
2. 금융소비자보호 강화	15
V. 요약 및 시사점	18

I. 서론

- 향후 새정부의 금융 및 보험산업 관련정책은 보험시장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.
- 이에 따라 우선 정책공약 내용을 기초로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고, 추후 인수위에서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분석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임.
- 제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“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”라는 정책공약집을 통해 국민 10대 정책공약을 제시하였음. 이 중에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정책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.

표 II-1 새누리당 10대 정책공약

정책공약 목표		10대 정책공약 내용
중산층 70% 재건 프로젝트	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	1. 가계부담 덜기 2.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3. 교육비 걱정 덜기 4.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확실하게 추진
	일자리 늘/지/오	5.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 6. 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 7. 근로자의 삶의 질 올리기
	더불어 함께하는 안전한 공동체	8. 국민안심프로젝트 추진 9.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10.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

- 본고는 새누리당의 정책공약을 기초로 보험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내용을 정리하였음.
- 이를 보험산업별 보험상품 개발 및 보험수요측면, 경영전략측면, 감독정책측면과 연관시켜 향후 미칠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음.
 - 보험상품개발 및 수요측면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보험의 영역 확장 등이 생명보험과 제3보험, 손해보험에 미치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.
 - 경영전략측면에서는 소유 및 지배구조, 모집채널, 공시와 경쟁정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.
 - 감독정책측면에서는 감독기구 재편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정책에 따른 비용수반 가능성과 금융 및 보험의 신뢰기반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.

Ⅱ. 보험상품 개발 및 수요 측면

1. 생명보험시장

■ 기초연금 도입

- (정책내용)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, 국민연금과 통합운영
 -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사람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 급여(94,600원)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
 - 이를 통해 사각지대나 재정불안정성이 없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연금 제도로 개편(2013년에 「기초노령연금법」을 「기초연금법」으로 전환하고,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「국민연금법」 법률 개정 추진)
 - ※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(65세 이상 비율 14.3%), 2026년 초고령사회(65세 이상 비율 20.8%)에 도달할 예정임.
 - ※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는 전체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%로 제한하고 있으며, 그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월 78만 원 이하, 노인부부가구 월 124.8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음.
- (영향) 정부가 65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노후소득지원정책을 하게 되는 경우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등 한계점에 노출된 계약자의 사적연금보험 가

입 수요는 전에 비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.

- 기존 사적연금에 가입한 계약자 중에서 소득이 없는 계약자는 정부 지원이 있다는 점에서 중도에 사적연금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있고, 경제상황에 어려워질 경우 일시적인 해지가능성도 존재함.
- 이에 반대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잠재 계약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제도 확대로 남는 자금으로 사적연금을 확대 가입할 가능성도 있음.

2. 제3보험시장

가. 건강보험

■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

- (정책내용) 실직자에 대하여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,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
 -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을 2013년에 개정하여 추진
- (영향) 동 정책은 직장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례가 많아 실직자에 대한 공적건강보험료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.

■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

- (정책내용) 4대 중증질환(암, 심장, 뇌혈관, 희귀난치성질환)에 대해 총 진료비(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)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

- 현재 75%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(비급여부문 포함)을 2013년 85%, 2014년 90%, 2015년 95%, 2016년 100%로 확대

- (영향)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모든 진료비를 공적보험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민영보험의 담보범위가 축소되어 지급보험금이 감소하고 민영건강보험의 시장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, 이를 고려한 보험상품의 세분화도 일어날 수 있음.

- 다만, 암보험과 같은 정액형 건강보험은 동 정책으로 인해 수요가 경감될 수 있겠지만, 소득상실리스크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감 폭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.

■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

- (정책내용)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3등급(200만 원, 300만 원, 400만 원)으로 되어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10등급으로 더 세분화하고 상한금액을 증액함.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의 경감을 유도함.

- 최하위 저소득계층부터 50만 원, 100만 원, 150만 원, 200만 원, 250만 원, 300만 원, 350만 원, 400만 원, 450만 원, 500만 원의 본인부담상한금액 설정(2013년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시행령 개정)

- 제도 도입 시 현행제도에 비해 67만 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.

- (영향) 민영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분에 대한 지급보험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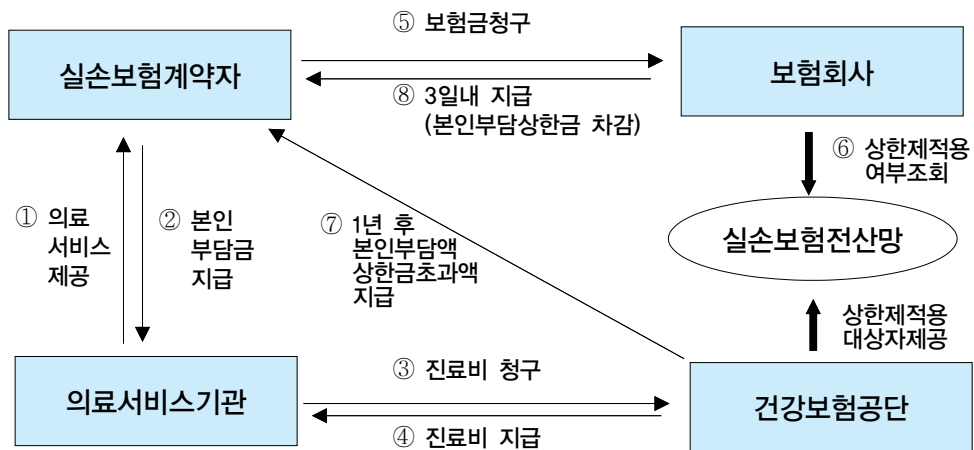
- 또한 민영실손의료보험은 본인부담상한금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¹⁾ 이를 공적건강보험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

1) 민영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 제4조(보상하지 않는 사항)는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통원 담보시 “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에 의해 국

될 필요성이 증가됨(2009년 기준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환급금으로 2,700억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하였음. 즉, 전부 민영보험가입자라면 부담보 금액이 됨).

-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자에 대한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지급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.

그림 II-1 본인부담금상한제 정보 공유체계도 예시



자료: 이창우·이기형(2011), 『의료시장환경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』, 보험연구원, p. 95.

■ 농어촌 실태에 부합되도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 개선

- (정책내용)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(79만 원)을 상향 조정, 건강보험료 경감
- (영향)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가 경감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민영 건강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임.

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(본인부담금 상한제)과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(의료급여법상의 본인부담금보상제 및 본인부담금상한제)을 규정하고 있음.

■ 65세 이상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

- (정책내용) 65세 이상 노인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임플란트가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,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하여 부위별로 확대 적용
 -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화 : 틀니(75세 이상 2012년 완전틀니, 2013년 부분틀니), 임플란트(2014년 이후)
- (영향) 최근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치아보험시장이 급성장하였으나, 국민건강보험에서 고령자에 대해 임플란트와 틀니를 담보하게 됨에 따라 민영보험의 치아보험 수요는 부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.
 - 다만,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원마련 상황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담보를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치아보험시장의 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.

나. 간병보험

■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

- (정책내용) 장기요양등급에 4~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에 우선 편입
 - 현재 노인인구 중 5.8%인 31만 7천 명만 급여혜택을 받고 있으나 향후 독일(8.0%)이나 일본(11.6%) 수준으로 상향(2013년 「장기요양보험법」 시행령 개정 추진)
- (영향) 공적간병보험에서 3급까지 담보하여 왔으나 추가적인 등급 신설로 가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민영간병보험의 수요는 미미하게 감소될 것으로 보임.

■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

- (정책내용)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부여부를 판정할 때 생활환경에 대한 점수를 포함시키고, 4등급과 5등급을 신설하여 대상 확대
 - 신체장애가 있는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(2013년 「장기요양보험법」 시행령 개정 추진)
- (영향) 공적간병보험의 가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민영간병보험의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보임.
 - 그러나 이들 계층은 본질적으로 민영간병보험의 가입 여력이 미약해 실제 보험가입자가 적어 보험시장의 수요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.

3. 손해보험시장

■ 농어업 재해대책 전면 개편

- (정책내용) 농어업재해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까지 50% 이상 확대하고, 보장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재편
 - 현재는 보험의 보장범위가 제한되고 보험금 급여수준이 미흡할 뿐 아니라 피해조사 절차가 느리고 대형재해 발생시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- (영향) 제한적인 보험시장이지만 정부의 지원이 있는 경우 보험시장 규모가 현재보다 약간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품의 운영측면에서 보면 수익성 확보는 곤란함.
 - 2011년 농작물보험 가입률 40.2%(보험료 2,200억 원), 양식재해보

험 가입률 8.2%(보험료 44억 원)

■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을 통한 녹색복지 구현

- (정책내용) 산림재해별 체계적인 맞춤형 방지체계 구축
- (영향) 임산물재해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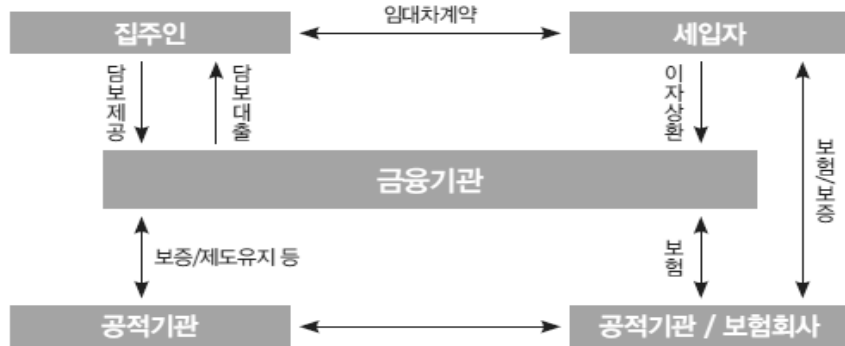
■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제도 구축

- (정책내용) 환경정의 구현을 위해 ‘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’ 등을 도입
 -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선진국 수준 이상의 강력한 구제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“실제 경제적 피해액과 복구비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배상액을 결정”하는 등 제도를 개선
 - 환경오염재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독물 생산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‘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’를 도입
- (영향) 그동안 기업의 부담 등으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법제 마련과 보험도입이 미루어져 왔으나, 향후 동 보험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손해보험 회사의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. 시장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.

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

- (정책내용) 집주인(임대인)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, 동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(임차인)가 납부·부담하는 제도

그림 Ⅱ-2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개념도



- (영향) 전세금보증보험의 수요가 신규로 발생하겠지만, 실제로 집주인 (임대인)이 보험에 가입할 유인이나 필요성이 적어 실수요는 적을 것으로 예상됨.

■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

- (정책내용) 농어업인은 「산재보험법」상에 적용제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급부제도에 준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보험료를 50% 이상 지원
 - － 현재 어업인 재해보험은 별도 법률(「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법」)에 의거 정책보험으로 운영(2011년 보험료 1,100억 원, 수협이 인수하고 손보사는 재보험 수재)
- (영향) 농어업인 재해에 대해 공적보험화(상해 및 사망, 장애에 대해 일시금 또는 연금지급)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민영보험 시장이 일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.
 - － 현재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민영보험으로는 농기계종합보험(자동차보험과 유사)이 운영 중임.

Ⅲ.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측면

1. 소유 및 지배구조

■ 기업지배구조 개선

- (정책내용)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,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회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 -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
 - 집중투표제,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
- (영향) 대기업집단에 속한 보험회사의 경우 순환출자 해소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.
 - 보험회사의 지배구조가 대주주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임. 이에 따라 투명한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철저한 경영공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■ 금산분리 강화

- (정책내용) 금융·보험회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(발행주식의 15%)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%까지 낮추어 의결권 제한을 강화
 -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축소(2009년 개정된 9%를 4%로 환원)
 -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

- (영향) 산업자본이 대주주로 되어 있는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 은행을 포함한 종합금융그룹화를 통한 성장과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.
 - 또한 대주주의 적격성이 동태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법규리스크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.

■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

- (정책내용) 총수일가의 불법과 사익편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」상의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 불가능, 대주주 등의 중대범죄 사면권 엄격제한
 -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강화하고 부당이익은 환수
 - 이를 위해 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」과 「공정거래법」을 개정
- (영향) 대기업집단에 속한 보험회사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적격요건을 보다 충실히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2. 보험모집채널

■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

- (정책내용)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
 -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
 - ※ 특수고용직 근로자 : 캐디, 학습지 교사, 레미콘 운송차주, 보험

모집인, 택배기사(퀵서비스기사), 대리운전, 텔레마케터 등

- (영향) 설계사 중심으로 운영 중인 보험회사의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한 보험료추가 부담과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따라 판매책임 부담 등에 있어서 판매자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.
 - 따라서 보험회사는 자사의 여건에 맞추어 다양한 채널 전략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.

3. 인력운용

■ 60세 정년 연장

- (정책내용)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함(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).
- (영향) 법적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 회사의 인력 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.

■ 정리해고 대타협기구 설립

- (정책내용) 근로자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사측의 일방적 인력구조조정 방지를 위해 사회적인 대타협기구를 설립하여 운영
 - 「근로기준법」의 정리해고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
- (영향) 유연한 인력운용에 제한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생산성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. 이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4. 경쟁정책

- (정책내용) 시장의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가격담합을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촉구하기 위한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집행체계를 개선할 예정
 - 비료, 농약, 사료, 에너지 등 가격안정화를 위해 사업체가 가격담합행위를 한 경우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, 집단소송제도 도입, 피해자의 해당담합행위 직접 금지청구권을 인정
 - 공정거래 관련법의 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폐지하여 법 집행의 견제와 공정한 법 집행을 확보
- (영향) 보험회사들의 담합행위도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, 가격 등에 대한 담합행위를 한 경우에 과거의 과징금뿐만 아니라 징벌적배상금 등 막대한 배상금을 부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.
 - 따라서 개별 보험회사는 공정한 경쟁정책을 근본으로 경쟁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.

IV. 보험산업 감독정책 측면

1. 금융감독기구 재편

■ 금융부 신설 및 쌍봉형 감독기구 도입

- (정책내용) 금융부 신설 : 현 금융위에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을 흡수하여 금융정책을 수립하고, 금융감독은 감독기관에 위임하여 수행
 - 쌍봉형 감독기구 도입 : 현재의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산하로 하되 금융건전성 감독기구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로 분리하여 운영
- (영향) 감독기구가 이원화됨에 따라 이들 기관 간의 상호견제를 통해 보다 강화된 정책과 감독이 시행되어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 금융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.
 - 이에 따라 규제수준은 현재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상호 견제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이나, 감독규제비용(regulatory cost)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.

2. 금융소비자보호 강화(금융위 내 한시기구도입 운영)

■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

- (정책내용) 약탈적 대출, 불법추심 등 대출관련 금융회사와 추심업자의

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출소비자 보호법규를 도입

- (영향) 보험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이자 등에 대한 제한이나 불법 추심업무를 근절하여 금융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.

■ 금융상품판매법 도입

- (정책내용) 보험, 신용카드 등 각종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법규 도입
- (영향)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규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영향은 달라짐.
 - 현재 보험업법에서 불완전판매 감소를 위한 행위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법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조정 여지가 있어 보임.
 - 일본과 같은 「금융상품판매법」²⁾을 도입하는 경우 판매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.
 -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판매채널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소비자중심으로 판매관행과 채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■ 금융투자상품 성과 비교공시 체계 구축

- (정책내용) 연금상품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, 투자자의 금융회사 성과비교가 용이하도록 비교 공시체계를 구축
- (영향) 변액연금상품의 수익률 논쟁으로 성과 비교공시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큰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임.

2) 일본은 「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(금융상품판매법)」과 「소비자계약법」을 200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음. 「금융상품판매법」은 금융상품 판매시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부여 및 이의 위반시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과, 판매업자에게 권유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방침 마련 및 공표 의무화 등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음. 「소비자계약법」은 금융소비를 포함한 모든 소비자에게 계약의 취소권을 부여하고 부당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무효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.

- 그러나 다른 권역의 금융투자형 상품과 비교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다른 공시업무가 추가 발생할 수 있음.

■ 금융영업관행 검토

- (정책내용) 금융수수료, 영업관행 등을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
- (영향) 보험원가 공시 등에 대한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회사의 영업관행은 보다 더 소비자보호 관점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.
 - 따라서 보험회사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영업관행에서 보다 선진적인 영업관행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시점임. 즉, IT기술을 활용하여 사업모형을 단순화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접근성 개선과 이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.

V. 요약 및 시사점

■ 새정부 정책공약의 보험영향 요약

분야	관련정책공약	생명보험	손해보험
보험상품 및 수요	기초연금 도입	연금보험 수요 감소	
	실직자건강보험료 부담완화	-	영향 적음
	4대 중증 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	-	수요 감소
	저소득층중산층 본인부담의료비 경감	-	수요 감소
	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	-	-
	장기요양보험 확대(장애, 치매, 저소득, 독거노인)	수요 감소	수요 감소
	농어업재해보험 전면개편	-	보유 증가
	산림재해 안전망 구축	-	수요 적음
	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 도입	-	신시장 가능
	65세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	수요 제한	수요 제한
	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	-	신수요
	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	-	수요 감소
경영전략	기업지배구조 개선	투명성 제고 필요	
	금산분리 강화	대주주 리스크 증가	
	대기업 집단 총수일가불법 사익편취행위 근절	법규리스크 증가	
	60세 정년연장 및 정리해고 대타협기구 설립	효율적 인력관리 필요	

분야	관련정책공약	생명보험	손해보험
	가격담합근절 공정거래법 개정	법규리스크 증가	
감독정책 변화	금융부 신설, 쌍봉형 감독기구	신뢰도 제고 및 규제비용 증가	
	대출소비자보호법규 도입	수익 감소	
	금융상품판매법 도입	판매채널 혁신	
	금융투자상품 비교공시 강화	자산운용능력 확대	
	금융영업관행 재검토	각종 마진 축소, 수익성 감소	

■ 시사점

- 새정부의 보험상품관련 정책 대부분이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공적보험이나 사회보험의 급부확대, 보험료 경감 등으로 인해 이를 대체하는 민영보험의 보험수요는 일정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임.
 - 민영건강보험이나 간병보험의 경우 공적보험이 민영보험을 일부 대체하므로 보험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.
 - 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가 새로운 보험수요로 보이나 정착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고, 정착되더라도 수익성 있는 보험제도로 운영되기에는 리스크특성상 제약적인 측면이 있음.
- 또한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감독기구의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규제비용은 상승하게 되고, 보험영업 경쟁정책의 강화로 각종 수익성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.
- 따라서 보험회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부합한 사업모형과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정부정책 변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.

저자약력

■ 이 기 형

국민대학교 경영학 박사
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(금융정책실 실장)
(E-mail : kihlee@kiri.or.kr)

■ 정 인 영

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
보험연구원 연구원
(E-mail : essence4u@kiri.or.kr)

CEO Report 2012-04

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(I) :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

발 행 일	2012년 12월
발 행 인	김 대 식
발 행 처	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-4
인 쇄 소	경성문화사 대표전화 786 - 2999

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
(☎3775-9014)로 연락하여 주십시오.